

[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 ]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

- 제 출 일 : 2003. 12. 1.
- 제 출 자 :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.

다. 상정일자 : 2003. 12. 6.

(제105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)

라. 의안번호 : 제 2003 - 63호

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공기업 전환에 따라 원인자 부담 원리를 도입하고,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는바,
- 그 동안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현실화 하여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해소코자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배수설비 공사비는 선납해야 하나,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(안 제3조)
  - 하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25% 인상함 (안 제11조 제2항 별표1)
  - 공공하수도 점용시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5조 제5항)
  -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역 일간지에 공고하고, 원인자부담금의 고지 및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정함 (안 제16조 제3항 , 제4항)
-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: 별표 5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하수도 사용료 인상비교표

(단위 : 톤, 원, %)

업종별	현행		개정		인상율		타시군	
	사용량	요금	사용량	요금	금액(원)	비율(%)	창녕	마산
가정용	0~10	68	1~20	94	26	35	108	144
	11~20	80						
	21~30	92	21~30	125	33	36	165	181
	31~40	104						
	41~50	118	31이상	167	50	30	231	181
	51이상	130						
업무용	0~20	78	1~30	110	32	37	단일	163
	21~50	98	31~50	139	41	42		
	51~100	120	51~100	169	49	41	구간 154원	163
	101~300	144	101~300	195	51	35		234
	301이상	168	301이상	242	74	44		267
영업용	0~30	120	1~30	110	△10	△8	220	173
	31~50	142	31~50	139	△3	△2	270	173
	51~100	163	51~100	169	6	4	319	244
	101~500	185	101~300	195	10	5	363	276
	501이상	206	301이상	242	36	19	396	276
욕탕2종	0~200	169	1~30	110	△ 59	△ 35		
	201~300	199	31~50	139	△ 30	△ 15		
	301~500	229	51~100	169	0	0		
	501이상	260	101~300	195	△4	△2		
			301이상	242	13	6		
욕탕1종	0~200	96	1~200	120	24	25	대중 탕용	천톤미만 162원
	201~300	113	201~300	147	16	14		
	301~500	130	301~500	172	42	32	192원	천톤이상 183원
	501이상	148	501이상	200	52	35		
산업용	1톤당	72	1톤당	109	37	51		

○ 평균적으로 25% 인상하였다 하나 현실화율은 불과 30%임.

○ 가정용은 30~35%정도 인상된 반면 영업용은 3~10%, 욕탕2종은 4~59% 감소한 경우도 있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생략

#### 5. 토론요지

○ 생략

#### 6. 수정안 요지

○ 없음

####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공기업 전환에 따라 원인자 부담원리를 도입하여 독립채산 기반을 조성코자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하수도 요금을 평균적으로 25%정도 인상하고,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체제나 형식,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함.

#### 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생략

#### 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생략